

의안
번호

315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4. 09. 02.

전문위원 강 영 숙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315호

다. 제출일자 : 2024. 08. 13.

라. 회부일자 : 2024. 08. 28.

2.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유형	위치	규모	정원	개소	비고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일반형	장위동 97-3, 1층 (장위3동주민센터)	138㎡	30명	2024.12. (예정)	신규설치

나. 위탁운영 개요

- 위탁기간 :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수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운영 업무 일체
 -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4호점 시설물 등 수탁 재산의 유지·관리
 - 기타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 등

4.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은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신규 설치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이하 “키움센터” 라 함) 성북14호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라 함) 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주요내용

- ‘키움센터’ 성북14호점이 2024년 12월 장위3동주민센터 1층에 신규 설치 예정임에 따라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후 향후 5년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시설 설치 및 연간 운영비에 대한 소요예산은 다음과 같음.

<우리동네 키움센터 성북14호점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비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	255,620	42,000	138,929	74,691	
연간 시설운영비(예상)	137,556	25,578	69,345	42,633	종사자2명 필수

- ‘키움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¹⁾에 따라 초등학생 방과 후,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현재 성북구는 시립거점형을 포함하여 총 13개소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위탁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우리동네키움센터 현황 >

시설명	센터장	행정동	주 소	면적 (㎡)	정원 /현원	개소일	위탁운영
1호점	손민경	장위1동	장위로21다길 53, 장위행복누림센터 3층	110	29/29	19.01.01.	(사법)한국청소년 교육연구원
2호점 융합형	김정미	석관동	화랑로 214, 래미안석관아파트 내	269	35/35	20.12.21.	
3호점	장현욱	동선동	아리랑로 27-3, 2~3층	149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4호점	이화재	장위2동	장위로40다길 10	187	30/30	21.03.01.	(사법) 미래복지경영
5호점	양재연	정릉2동	아리랑로19다길 12	194	30/30	21.09.01.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아이
6호점	이정민	돈암2동	아리랑로 89, 일신건영아파트 내	153	30/30	21.10.01.	(사법)해피피플
7호점	안명자	길음1동	길음로 118, 404-101 이편한세상아파트 내	84	20/20	21.10.01.	(사법)꿈의아이들
8호점	신호영	길음2동	승인로 50, 114동 1층 센터피스아파트 내	106	26/26	21.03.01.	
9호점	김정윤	정릉4동	보국문로16길 2, 2층	90	23/23	21.03.01.	(사법)해피피플
10호점	이은영	종암동	종암로25길 29, 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238	30/30	21.09.01.	함께살이성북 사회적협동조합
11호점	김지윤	삼선동	보문로29길 101, 3층	132	30/30	22.07.01.	(사법)꿈의아이들
12호점	안은숙	길음1동	삼양로9길 14-7,2~3층 길음소리마을센터	196	30/30	23.12.18.	(사법)세대통합복 지문화교육협회
시립 거점형	최명숙	종암동	회기로3길 17, 2~5층	1,170	-	22.10.01	사단법인 동행연우회

다. 민간위탁 근거 및 지정위탁의 적정성

- ‘키움센터’ 운영사무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2)에 구청장이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있으며, 돌봄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돌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 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 위탁 사무로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라.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고 있는바, 본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됨.